

##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회 회칙

### 제1장 총칙

#### 제1조(명칭)

- ①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회라 칭한다. (이하 "본회"라 한다.)

#### 제2조(목적)

- ① 본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, 학생들의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추구하고 학생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예비사회복지사로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.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회원자격 및 구성)

- ①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속 학생으로 한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학회비 납부자, 준회원은 학회비 미 납부자 및 휴학생으로 구분한다.
- ③ 사회복지를 복수 및 이중 전공하는 타 학과 학생 중 희망자는 자격을 갖추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
#### 제4조(회원의 권리)

- ① 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1/3 이상의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, 요건을 갖추어 임시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학회의 운영 및 제반 활동에 참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정회원은 학회비 납부를 통해 본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행사 참여비를 납부한 준회원의 경우 납부한 해당 행사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2장 총회

#### 제5조(구성)

-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6조(모임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  -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 - 회원의 1/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- ④ 정기 총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20%이상 출석 시 개최하며, 인원 미달 시 개최할 수 없다.

제7조(의결사항)

- ① 본회 임원단 선출
- ② 회칙 개정
- ③ 사업 보고 및 결산
- ④ 기타 임원단이 제안하는 사항

제8조(의결정족수)

- 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 
단,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3장 임원**

제9조(임원단)

- ① 본회 임원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단, 본회의 회장의 필요에 따라 선출 시 본회의 임원단 구성은 변경될 수 있다.

-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
| - 회장  | - 대외부 |
| - 부회장 | - 복지부 |
| - 총무  | - 홍보부 |
| - 회계  |       |
| - 서기  |       |

- ② 본회 임원단 중 회장, 부회장, 총무, 회계, 서기를 제외한 학회원이 학년별 과대, 부과대 역할과 부서 사업을 겸직하며, 본회의 회장이 면접을 통해 선출한다.

제10조(선거)

- ① 본회의 회장 후보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(현 학기 포함)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. 단, 편입생인 경우에는 2학기 이상을 등록한자로 한다.
- ② 본회의 부회장 후보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 2학기(현 학기 포함)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.
- ③ 본회의 선거는 투표로 진행된다.

제11조(자격과 선출)

- ①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. 단, 복수전공자와 이중 전공자는 회장단에서 제외된다.
- ② 회장과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득표수를 많이 받은 자로 선출한다.
- ③ 회장이 부회장을 제외한 총무, 회계, 서기를 임명한다.
- ④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투표자의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 일 때 선출한다.

#### 제12조(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학회장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연임이 가능하다.

#### 제13조(직무)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본회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학회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다.  
또한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회장 및 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④ 서기는 본회의 회의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기술, 문서화하여 보관한다.
- ⑤ 회계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며, 학기 당 1회 재정보고를 한다.
- ⑥ 홍보부는 학과의 모든 사업 및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.
- ⑦ 복지부는 학우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.
- ⑧ 대외부는 학우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한다.

### 제4장 재원과 회비

#### 제14조(재원과 회비)

- ① 본회의 재원은 학회비, 찬조금,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.
- ② 학회비는 1년에 4만 원이다.
- ③ 2017년 신입입생, 전과생부터는 전 학년 회비를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
- ④ 본회의 임원은 학회비를 의무로 납부해야 한다.

#### 제15조(회비 환불)

- ① 회비 환불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.
- ② 환불액은 납부한 학회비 가운데 남은 학기 해당분으로 한다.  
단, 자격상실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(회계연도)

-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.

### 제5장 회원 자격상실

#### 제17조(탈퇴)

- ① 본회 회원은 소속이 바뀌지 않는 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.

#### 제18조(자격상실 및 징계)

- ① 졸업, 전과, 자퇴, 퇴학의 사유 발생 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②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런 행위를

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그 회원의 징계를 의결토록 할 수 있다.

## 제6장 회칙 개정

### 제24조(회칙)

- ① 학회 임원이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에게 14일 이상 공지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총회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.

### <부칙>

- ① 본 회칙은 2023년 2월 16일에 개정하여 2023년 2월 22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회 임원의 결정 및 통상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.